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규칙 제3273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사용의 시기)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 기타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27.>

부칙 <제3003호, 201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